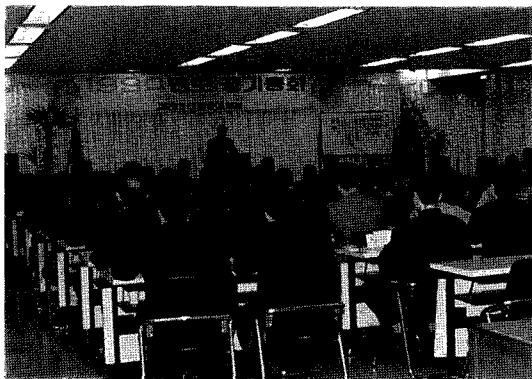


대한 양계협회

소식

본회 '94년도 정기총회 개최
조직강화에 역점두기로



본회 '94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5일 오후2시 대의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93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결산보고에 이어 '9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94년도를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생산자의 의식전환을 통한 자조정신의 고양, 양계인의 조직강화

를 통한 양계산업의 위상제고,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과 상품성 향상방안의 연구·보급을 비롯하여 차별화된 상품개발, 자율생산조절, 및 소비홍보를 통한 가격의 안정, 구조개선을 통한 전기업화를 촉진시킴은 물론 각종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여 당국에 건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양계인이 마음놓고 생산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강구해 나가기로 의결을 모았다.

이어 양계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및 관련업체에 대한 공로패, 표창패 및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93년도 사업실적 및 '94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본문 60페이지 참조)

〈감사패〉

- 김진구 대표(성일파마)
- 최병평 최카피연구실 실장
- 이철호 가평군 설악면장(공무원)
- 김제훈 안성군 축산과장(공무원)

〈표창패〉

- 배진숙 경북지부(직원)
- 최홍규 닭경제능력검정소(직원)

〈공로패〉

- 김일환 대표(동림농장, 전남지부)
- 유재영 대표(남도축산, 전북지부)
- 윤영만 대표(정축연합회, 경북지부)
- 강종순 대표(수양농장, 경남지부)
- 강연선 대표(연일농장, 안성분회)
- 이태용 대표(승진농장, 이천채란)
- 장영춘 대표(지성농장, 포천채란)
- 송복근 대표(무궁화농장, 동두천분회)

- 이언종 대표(신영농장, 서산군육계)
- 남광풍 대표(풍전부화장)
- 신흥종 본회 명예회장 (고창양계)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관한 관계법령 개정

본회에서 '93. 4. 24 와 2차에 걸쳐 행정체신과제 발표회의 및 '93. 9. 1차로 양계에 관한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하였는데 지난 '93.12.14자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양계규모에 관계없이 현금출자만으로 양계인 5인 이상(인접 시군 거주자)이면 누구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1.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6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농민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93. 6.11).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제43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1가구당”은 “조합원 1인당”으로 본다(개정 '93. 6.11)

③ 영농조합법인은 그 명칭 중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는 당해 시·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3. 6.11)

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농민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⑥ 영농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⑦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 기재사항·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93. 6.11).

2.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6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②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6조 제6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8호,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3. 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조합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법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조합법인이 설립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전 및 변경등기) ① 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등기소) ① 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0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제193조, 제197조 내지 제202조, 제204조 내지 제207조 및 제209조,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조합법인에의 출자)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지, 현금 또는 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조합법인의 사업) 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농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정관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

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법인의 합병
 3. 조합법인의 파산
 4.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제15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조합법인의 육성·지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 동조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당해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의 장

은 그 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법인 설립통지) ①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은 설립의 등기를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조합법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법인 현황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해당 농협중앙회 군지부 또는 축산업협동조합과 시·군농촌지도소에 그 설립사실을 통지하여 조합법인을 육성·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R대책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들이 지난 '93년12월10일(축단연 제131-3호)부로 UR대책에 대한 건의서를 민주자유당에 제출한 바, 농림수산부로부터 지난 1월28일 UR대책 건의에 대한 회신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 UR대책 건의에 대한 회신

1. 사료 및 축산 생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우리부에서도 국내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방안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중에 있음.

2. 자조금제도의 입법화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양축농가의 자구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부과·징수 할 필요성이 있음은 동감하고 있으나, 의무부과 자조금은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축산농가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축협중앙회 및 업종조합 등 이해당사자는 의무부과 자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바, 생산자단체 및 지역별로 특정품목의 지도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축산농가 스스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입법화 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축산업 지원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축산자금의 지원조건은 농림수산부문 타 정책자금과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특별히 축산자금의 지원조건만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다만 UR 타결에 따라 앞으로 농림수산부문 정책자금의 지원조건을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축산자금의 지원조건 완화를 검토코자함.

4. 축산분뇨 처리 지원

정부의 축산공해방지 지원방침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축산농가가 퇴비화 시설 등을 설치토록하여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공해 방지시설에 투자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축산정책자금 지원조건을 조정할 경우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융자 및 보조비율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음.

5. 끝으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직접보상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수입개방에 따른 영세 축산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직접보상 보다는 축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축산농가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위해 정부는 신농정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앞으로도 생산비 절감을 통한 우리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당부드린다.

'94닭경제능력검정소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본회는 안성에 있는 닭경제능력 검정소의 검정시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23일 본회 회의실에서 시설자동화에 대한 계획을 시설대상업체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공사기간은 '94년 4월~10월 까지로 하고, 계사신축은 무창계사 1만2천수분 육추사, 성계사 각각 1동으로 하는 공사개요 설명과 업체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단 우리나라 닭의 개량을 위하여 전액무상 또는 염가로 시공하겠다는 업체가 있을 때는 이를 우선 시공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래닭의 고품질 육용화 시험연구 개발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본회가 사업주체가 되고, 국립종축원, 축산시



협장, 가축위생연구소, 가금학회 및 재래닭보존 연구회가 협조토록하며, '94년부터 '97년까지 4년동안 사업기간으로 하는 “재래닭의 고품질 육용화 시험연구개발 추진협의회”가 지난 16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재래닭의 유전적 생산능력 평가 및 가계조성('94~'95년) △우량교배조합선발 및 사료급여기준 설정('95~'96년) △실용계 사양관리체계 확립 및 육질평가 기준 설정('96~'97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1억8백만원, 지원조건은 전액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으로 실시토록 되어있으며, 시험기간중 생산물은 판매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 최홍규 차장 표창패 수상



△최홍규 차장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 최홍규 차장은 지난 25일 '94년 정기총회시에 닭 경제능력검정업무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 검정 사업의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패를 수상하였다.

본지발전 유공자 '94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지난 25일 본회 '94년도 정기총회에서 본지 발전에 공로가 큰 (주)성일파마(대표이사 김진구), 최카피연구실(실장 최병광)이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김진구 대표이사



△ 최병광 실장

전미국대두협회 이경원 대표에 감사패 증정



본회는 지난 18일 미국대두협회 한국대표 이취임식에서 그동안 본회업무 및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오던 미국대두협회 한국사무소 대표 이경원 박사가 퇴임함에 따라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지부 및 분회 임원개선

△경남지부

- 육계분과위원장 : 하성환

△포천육계분회

- 분회장 : 김원태



△하성환



△김원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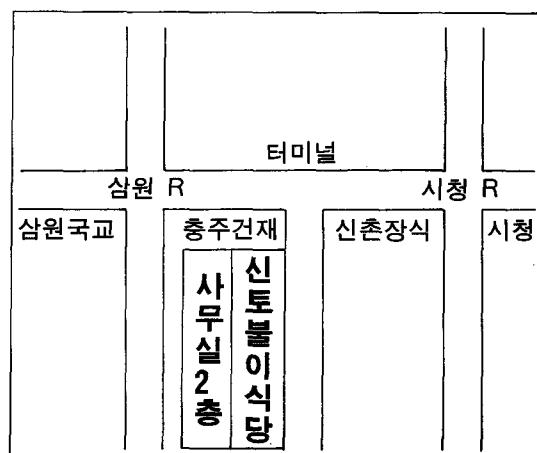
충주육계분회

사무실이전

충주육계분회(분회장 : 강문달)는 지난 19일 창립총회를 거쳐 본격 업무에 들어간 가칭 충주양계협동조합(조합장 : 강문달)과 업무활성화를 위해 업무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사무실을 통합운영기로 함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주소 : 충북 충주시 봉방동 19-13

• 약도



철저한 방역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